

지방세 감면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상호(법인명)	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
	주소 또는 영업소		

감면대상	차량번호		차 종	승용·승합·화물	승차정원	
					배기량	CC

감면세액	감면세목 : 차량취득세	과세연도
	과세표준액	감면구분
	당초 결정세액	감면받으려는 세액

감면 신청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감면 : 장애명() 급수 (급)
	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유공자 감면 : 국가유공명(, 상이 급),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(급), 5·18민주화 신체장애(급)
	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감면 :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
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:

감면 근거규정	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조(장애인), 제29조(국가유공자등), 제22조의2(다자녀), 제57조의2(합병·분할), 제66조(교환, 수소·전기, 하이브리드), 제67조(경형), 제68조(수출용), 제70조(여객운수), 제92조(천재지변 대체취득)
---------	--

관계 증명 서류	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※ 기존 보유한 차량의 차량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여부
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기존에 감면받았던 자동차가 있는 경우,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기존 차량에 대한 감면여부를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차량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추징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	
기존 차량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새로 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.	

⇒ A. 기존에 감면받은 적 없음 ()

⇒ B. 기존에 감면받은 적 있음 ()

B-1. 감면받았던 차량 번호 : _____
 기존차량은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등록 등 예정 확인-----
 ()

B-2. 장애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그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하지 않았음을

